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4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 05.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4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 2022.12.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빙과 및 얼음류의 불필요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품 및 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 유통 가능한 식품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치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I. 3. 머, II. 1. 버.~어., II. 2. 다. 1))

- 1)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 2)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III. 1. 가, 다, 사, 자, 카, 더, 머, 버, 저, 커)

- 1)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 1)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3. 며. 중 “단층플라스틱필름”을 “제조·가공 또는 위생처리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할 목적으로 단층 플라스틱 필름”으로 한다.

II. 1. 중 버.를 서.로 하고, 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을,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가공품을,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유가공품을,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관 및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1)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또는 품질 유지기한)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 2)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3)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
- 4)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 표시
- 5)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해동된 냉장(실온)제품” 이라는 표시를 “냉동” 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 표시

Ⅱ. 2. 다. 1)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유형에 한함)”을 (「식품 위생법」 제7조에 따른 유형에 한함. 단, 병과류 중 병과 및 얼음류는 제외함)”으로 한다.

Ⅲ. 1. 가. 2) 거) (4)와 (5)를 삭제한다.

Ⅲ. 1. 다. 2) 거) (2)와 (3)을 삭제한다.

Ⅲ. 1. 사. 2) 가) (15)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한다.

Ⅲ. 1. 자. 2) 거) (3) (나)와 (다)를 삭제한다.

Ⅲ. 1. 카. 2) 거) (4)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로 하고, 같은 거)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 제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 ○○○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해동제품

Ⅲ. 1. 더. 2) 거)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식육간편조리세트 중 원재료(식육 제외)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 ○○○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해동제품

Ⅲ. 1. 머. 1) 자)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같은 목 2) 거) (10)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같은 거)에 (15)와 (16)을 삭제한다.

Ⅲ. 1. 버. 2) 거) (5)와 (6)을 삭제하고, (7)부터 (9)까지를 각각 (5)부터 (7)로 한다.

Ⅲ. 1. 저. 2) 거)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즉석조리식품 및 간편조리세트

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 ○○○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해동제품

Ⅲ. 1. 커. 1) 가)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한다.

『별지1』 1. 가. 1)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식용란선별포장업 : 영업 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3]의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한다.

부칙<제2023- 호, 2023. .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Ⅲ. 1. 사. 2) 거) (15) 및 며. 1) 자)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Ⅲ. 1. 카. 2) 거) (4)의 개정규정 : 2026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I. 총칙</p> <p>3. 용어의 정의</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리.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머. “레토르트(retort)식품”은 <u>단층플라스틱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버. ~ 터. (생 략)</p> <p>II. 공통표시기준</p> <p>1. 표시방법</p> <p style="padding-left: 20px;">가.~머.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I. 총칙</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리.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머. -----</p> <p style="padding-left: 20px;"><u>제조·가공 또는 위생처리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할 목적으로 단층 플라스틱필름-----</u></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버. ~ 터. (현행과 같음)</p> <p>II. 공통표시기준</p> <p>1. 표시방법</p> <p style="padding-left: 20px;">가.~머.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 가공품 제외)을,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가공품을,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유가공품을,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u></p>

관 및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신 설>

2)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3)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

<신 설>

4)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 표시

<신 설>

5)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버. (생략)

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가.·나. (생략)

다. 냉동식품

- 1)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유형에 한함)

2) ~ 8) (생략)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생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략)

거) 기타표시사항

표시를 “냉동” 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 표시

서.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1) -----

----- 한함. 단, 병과

류 중 병과 및 얼음류는

제외함)

2) ~ 8) (현행과 같음)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

가. -----

1)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3) (생략)

(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자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떡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
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
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
동 후 소비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
재지(냉동제품의 제조
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
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
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
니하게 부착하여야 한
다.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자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떡류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
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
다.

- (6) (생 략)
- 3) (생 략)
- 나. (생 략)
- 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1) (생 략)
- 2) 표시사항
 - 가) ~ 하) (생 략)
 - 거) 기타표시사항

- (1) (생 략)
-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자가 냉동식품인 초콜릿류를 해동하여 출고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 해동연월일, 냉
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
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 해동한 제
조업체의 명칭과 소재
지(냉동제품의 제조업
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
략할 수 있다),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
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 (6)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 다. -----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 하) (현행과 같음)
 - 거)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초콜릿류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생략)

라. ~ 바. (생략)

사. 식용유지류

1) (생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략)

거) 기타표시사항

(1) ~ (14) (생략)

(15) 모조치즈

자연치즈 또는 가공치즈와 혼동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 (18) (생략)

<삭제>

3) (현행과 같음)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

1)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14) (현행과 같음)

(15) -----

치즈 또는 -----

-----.

(16) ~ (18) (현행과 같음)

3) (생 략)

아. (생 략)

자. 음료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 (2) (생 략)

(3) 과일 · 채소류음료

(가) (생 략)

(나) 식품제조 · 가공업 영

업자가 냉동식품인

과 · 채주스를 해동하

여 유통하려는 경우

에는 제조연월일, 해

동연월일, 냉동식품

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

다), 해동 후 보관방

법 및 주의사항을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3)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

1)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과·채주스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 (9) (생략)

3) (생략)

차. (생략)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1) (생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략)

거) 기타표시사항

(1) ~ (3) (생략)

(4)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 (8) (생략)

<삭 제>

(4) ~ (9)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

1)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3) (현행과 같음)

(4)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 3) (생 략)
- 타. ~ 너. (생 략)
- 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1) (생 략)
- 2) 표시사항
 - 가) ~ 하) (생 략)
 - 거) 기타표시사항
 - (1) ~ (12) (생 략)

<신 설>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 ○○○
 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해동제품

- 3) (현행과 같음)
- 타. ~ 너. (현행과 같음)
- 더. -----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 하) (현행과 같음)
- 거)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식육간편조리세트 중 원재료(식육 제외)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

- 3) (생 략)
 러. (생 략)
 며. 유가공품류
- 1) 유형
- 가) ~ 아) (생 략)
 자) 치즈류(*축산물)
자연치즈, 가공치즈
 차) ~ 하) (생 략)
- 2) 표시사항
- 가)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 (1) ~ (9) (생 략)
 (10) 농축유류, 자연치즈, 유
 청류의 경우 특정성분
 을 제품명으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11) ~ (14) (생 략)
 (15)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
 공업 영업자가 치즈
 류, 버터류를 해동하

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 ○○○
 은 냉동제품을 해동하
 여 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해동제
 품

- 3) (현행과 같음)
 러. (현행과 같음)
 며. -----
- 1)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치즈, -----
 차) ~ 하) (현행과 같음)
- 2) -----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치즈-----

 -----.
- (11) ~ (14) (현행과 같음)
- <삭 제>

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는 제조년월일, 해동
연월일, 냉동식품으로
서의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
기한, 해동한 제조업
체의 명칭과 소재지
(냉동제품의 제조업체
와 동일한 경우는 생
략할 수 있다),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
며, 주표시면에는 “해
동된 냉장(실온)제품”
이라는 표시를 “냉
동” 이라고 표시된 근
처에 추가로 표시하여
야 한다. 다만, 이 경
우에는 스티커, 라벨
(Label) 또는 꼬리표
(Tag)를 사용할 수 있
으나 떨어지지 아니하
게 부착하여야 한다.

(16)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
공업 영업자가 치즈
류, 버터류를 해동하
여 유통할 때에는 “이

<삭 제>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생략)

버. 수산가공식품류

1) (생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략)

거) 기타표시사항

(1) ~ (4) (생략)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자가 냉동식품인 젓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을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

3) (현행과 같음)

버. -----

1)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 후 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젓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을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 (9) (생략)

- 3) (생략)
- 서.·어. (생략)
- 저. 즉석식품류
- 1) (생략)

<삭제>

(5) ~ (7) (현행 (7)부터 (9)까지와 같음)

- 3) (현행과 같음)
- 서.·어. (현행과 같음)
- 저. -----
- 1) (현행과 같음)

- 2) 표시사항
 가) ~ 하) (생략)
 거) 기타표시사항
 (1)·(2) (생략)

<신설>

- 3) (생략)
 처. (생략)
 커. 식용란(수입식용란을 포함한다)
 1) 표시사항
 가) 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2) (현행과 같음)
 (3) 즉석조리식품 및 간편

조리세트

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 ○○○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재료○○○: 해동제품

- 3) (현행과 같음)
 처. (현행과 같음)
 커. -----

 1) -----
 가) -----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1) ~ (5) (생 략)

나) (생 략)

2) (생 략)

터.·퍼. (생 략)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

나.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1) 업종별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아) (생 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터.·퍼. (현행과 같음)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식용란선별포장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3] 1회 섭취참고량

번호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세부	1회섭취참고량
19	유가공품	우유류	우유		200 ml
			환원유		200 ml
		가공유류	강화우유		200 ml
			유산균첨가우유		200 ml
			유당분해우유		200 ml
			가공유		200 ml
		산양유	산양유		200 ml
		발효유류	발효유		80ml 또는 80g
			발효유와 발효유분말을 제외한 발효유류		액상 150 ml, 호상 100ml 또는 100g

[표 3] 1회 섭취참고량

번호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세부	1회섭취참고량
19	유가공품	우유류	우유		200 ml
			환원유		200 ml
		가공유류	강화우유		200 ml
			유산균첨가우유		200 ml
			유당분해우유		200 ml
			가공유		200 ml
		산양유	산양유		200 ml
		발효유류	발효유		80ml 또는 80g
			발효유와 발효유분말을 제외한 발효유류		액상 150 ml, 호상 100ml 또는 100g

번호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세부	1회섭취 참고량
		버터유	버터유		-
		농축유류			-
		유크림류			-
		버터류			-
		치즈류	자연치즈		20 g
			가공치즈		20 g
		분유류			-
		유청류			-
		유당			-
		유단백가수 분해식품			-
		유함유가공 품			-

번호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세부	1회섭취 참고량
		버터유	버터유		-
		농축유류			-
		유크림류			-
		버터류			-
		치즈류	치즈		20 g
			가공치즈		20 g
		분유류			-
		유청류			-
		유당			-
		유단백가수 분해식품			-
		유함유가공 품			-